

# 회사분할 결정 공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 분할을 결정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분할방법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합니다.

<분할의 개요>

###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회사명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비고 : 상장법인

### ② 분할신설회사

회사명 :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

사업부문 :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업부문(관련 자산, 부채 및 조직 일체 포함)

비고 : 비상장법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분할회사에 배정되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3) 분할기일은 2026년 6월 1일(0시)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3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될 예정입니다.

## 2. 분할목적

(1) 본건 분할은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 및 구조적 수익성 악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됩니다.

(2) 이를 통해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효율화하여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운영 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와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 간의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강화하고 대산공장 내 생산 공정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 회사는 본건 사업구조 재편이 제조 원가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3. 회사분할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6년 4월 7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분할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회사분할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하기 "(3) 행사방법 및 장소"에 따라 제출

(2) 제출기간 : 2026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29일까지

(3) 행사방법 및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14F CSV팀

